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3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4. 08. 27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9. 1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교통과장 이주열)

가. 개정이유

-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0조제2항·제4항·제5항 및 제8항 삭제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038(2024. 7. 11.)호]
- 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200호
- 가) 예고기간: 2024. 7. 12. ~ 2024. 8. 1.(20일간)
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0조)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,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1. 1. 8.)되어 현행 군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관련 법령의 개정(2021. 1. 8.)사항 반영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